第284回國會
(定期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6 號(附錄)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9年11月30日(月)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입법예고 제도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의 제안 및 의결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 여론수렴 과정이 미흡한 채 의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제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입법예고의 매체를 국회공보 뿐만 아니라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여 입법예고가 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을 실현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입법예고 매체를 현재의 국회공보 뿐만 아니라 국회방송 또는 국회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하고,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장이 입법예고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누구든지 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입법예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제도가 그 기능적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김학송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정비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 선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대한 결산과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혹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하며,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된다.”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5조 ②항).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 규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의 겸임만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겸직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국회의원에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운영위원들께서 공감하시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그 직무에 전념해야 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적인 제도가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진영 의원입니다.

법률안의 발의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률안 발의권한이 국회나 교섭단체 또는 다수 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79조에서는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다수 의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법률안 제출권을 의원 개인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입법권의 부당한 제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당정치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무소속 국회의원의 경우 발의 시의 정수요건은 심각한 입법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률안 제출 등 의안의 발의에 있어 정수요건을 삭제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린 개정안에서는 현행 국회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발의 요건 중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현직 대학교

수들이 대거 출마를 하면서 학기 중 휴직을 하거나 수업을 휴강하여 이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실 정치 참여를 통해 학문을 실제로 접목시킨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갑작스러운 휴직으로 인한 대학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수들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재당선될 때마다 8년, 12년씩 장기간 휴직하고 해당 대학은 휴직한 교수의 전공 수업을 시간 강사로 장기간 대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 활동 대학 교수의 휴직을 금지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해 규정된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임기 개시일에 해직되도록 하고 기존에 휴직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개정법률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개정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구성에서부터 의사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국회 의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비교섭단체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구성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엄연히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국회법으로 인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제도적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의 "20인 이상으로"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입니다. 소수자의 대표인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국회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배제하고 진입장벽으로까지 기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섭단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교섭단체의 규정이 없고, 독일은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입니다. 프랑스·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의석 수를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법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며, 기타 서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섭단체의 완화기준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운영제도 개선 자문회의도 교섭단체 완화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에 권고하였던 바 있고, 지난 제6대에부터 제8대의 국회에서는 1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아무런 합리적 기준 없이 기존 정당의 기득권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의 밀실운영'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인 국회운영과 정확한 민의반영을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기준을 '15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직제를 반영하여 각 상임위에 고루 분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요구하는 한편, 현행 국회법보다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려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개정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 국회,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 수가 점차 증가하고 전문적인 내용의 법안이 속출하는 등 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제도개선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대 국회가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설 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 등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새로운 정책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정리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부 등이 서류 등을 제출하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지나치게 길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적시성 있는 안건심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적시성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보고, 서류의 제출 또는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8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야말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중앙과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로서 지방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자율·자족 체제 정착을 통한 지방자치 신장과 정부지원 및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상호연계·보완으로 앞당겨질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신장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행정·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칭되고 있는 현행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며, 광역경제권 구축도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은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참여와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지방자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를 발전적으로 뒷받침하고, 헌법 제123조제2항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부정책과 법률안 등은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과제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회에 상설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며, 본 법

안은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8. 13.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 제123조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60~70년대에 성장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면서 우선 경쟁력을 갖춘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개발하였는데, 이것이 1만 불, 2만 불 국민소득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한 혼잡비용을 지출할 정도로 집적이익의 감소와 비효율의 급증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비수도권에서는 인구·인적자원·자본의 유출로 인한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잠재력을 통한 자생력 발휘의 여건 마련이 지체되는 등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 격차는, 일단 발생하면 자기영속적인 경향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해소방안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경제중심지로의 집적이 강화되어 주변부 지역경제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려는 제한적 규모의 정책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집적지역이 누리는 집적의 초과이윤을 넘어서는 정도의 강력한 유인책을 정부가 나서서 조치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의 투자집중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는 반면, 지방투자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의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토관리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공정경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순환구조는 지방투자를 증대시킬 때 추가 형성의 탄력을 받기 때문에 지방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적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지방의 역량제고 및 육성강화를 기반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적인 특별위원회로서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려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간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회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1)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적인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둡니다(안 제46조의4 제1항).

(2)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대통령 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2항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소관으로 합니다(안 제46조의4 제2항).

※참고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회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국회의 일반 상임위원회의 예에 준합니다(안 제46조의4 제3항 및 제4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희철 의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또는 금융정책에 관한 감독 등 국가경제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화성 갑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해 소관기관의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수시로 받고,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예·결산과 관련된 소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결산 심의 시 첨부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선심성 예산증액 등의 잘못된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한 세출 예산 항목을 수정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예·결산 심사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안 제84조의2항),

소관상임위원회의 예·결산 심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가하게 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삭감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4조의5항).

아무쪼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성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의사결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입법·정책활동은 상호 존중하에 이성적인 토론과 논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회의장 점거와 과격한 몸싸움, 소란 등은 국회의 존재의의를 퇴색시키고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만 안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 의회의 경우, 회의장 질서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사규칙은 본회의장을 입법 및 의원총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회 의사규칙의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의장이 해당자에게 주의·견책·일시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법에는 의원의 의장석 점거, 본회의장 봉쇄와 같은 무력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출입하거나 무단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원 등이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의 의회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만 본회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위반한 사용이나 무단점거의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자에게 국회의 의결 없이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본회의장에서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어지럽히는 의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뜻을 살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현재까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서 정부·행정기관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유는 정부 및 행정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당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 요구를 국회법에 신설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해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 의원이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班)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도 종합적 포괄적이며 행정부 전 조직에 대한 감독권이 보장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도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하고, 요구자료의 범위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적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고·서류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동료 의원 86인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혐의를 구실로 부당하게 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기 중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정부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여야 하는바, 현행법에는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표결권 행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의 진상, 증거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찬반을 위한 아무런 판단자료 없이 찬반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표결 결과에 대한 불신과 표결권의 자의적 행사 등 문제점을 시정하여 표결 결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명확한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4대부터 17대 국회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총 29건 중, 7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입법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법안이 제정되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이전에 해당 의원의 체포·구금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책임성과 헌법적 권한이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에 국회의 규제신설 억제노력이 합쳐져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합니다.

현행 입법절차상,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규제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원입법이 '규제심사 우회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편법·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 규제존속기한을 설정 및 '규제영향분석 전문조직'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광진 갑 출신 권택기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 준비 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 등을 통해 법률안의 실현가능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여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의 또는 제안·제출된 의안에 대한 별도의 추계서를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안 제79조의2제3항 신설).

둘째,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합니다(안 제79조의3 신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 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30일 이내에서 연중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들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8대 국회는 개원초기부터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헌정 60년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헌정 마비 사태가 초래된 바 있고, 현재 특정정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안건 상정 자체를 방해해 전체 국회의사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이에 대한 제재수단과 국회정상화를 위한 관련규정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의원은 법에 의한 절차없이 회의장의 국회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회의원총선거일 현재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정수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의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당해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또한 법사위에 회부된 후 1월이 경과한 때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법률안은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갑습니다. 김성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화하여 안건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하는 상설소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설소위원회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폐회 중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회 중에도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위임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상설소위원회의 수를 5개 이내로 하며,

둘째, 상설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상설소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4)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법 제5조제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제18대 국회가 무려 82일만에 개원식을 가진 데 이어,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는 등 제도적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감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한 '부실국감'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한 국회의 공전을 방지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첫째,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공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불참하는 경우,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는 경우, 회의의 질서유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수당·여비를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 구성은 각 정당대표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국회 공전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 대상에 공정위원회위원장·금감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행정기관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의원이 본회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윤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 종류에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 을 출신 민주당 최철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게 되

어 있으나, 동 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는 지식경제부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나 돼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사용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37조는 타 부처 소관 기금사업을 심의하여 계획안을 조정·의결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 부처 소관 기금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계획안 심의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심도 있는 계획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운용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를 소관하는 국회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나, 지식경제부 이외의 부처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업무보고 및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없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임하게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타 부처 소관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 부처 소관기금 사업을 심사하는데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홍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12. 12.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지난 달 중순,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기대를 모았던 2009년도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워낙 늦었던 데다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이 뒤늦게 다시 제출되었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속에서 굳이 12월 12일이라는 시간적 제한까지 두는 바람에 졸속심사의 극치를 보여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안 졸속처리는 각종 정치적 이유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매년 12월 들어 2주 정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30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겉핥기식 졸속심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현재의 한시적 특별위원회에서 상설화된 상임위원회로 바꿔 국회가 정부의 차기회계연도 예산안 작성 단계부터 참여토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인 권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되고 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게다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예산안을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90일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예산안 심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박겉핥기식 졸속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의 적자재정이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국회의 예산권능의 회복,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강화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세출을 철저히 심의하여 국가재정 건전화를 앞당기고 국민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 핵심적 요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매우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웬만한 선진국들도 모두 예결위가 상임위화되어 있고 장시간 예

산안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조속한 시간 내에 통과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우리 국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그 소관을 국가의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와 기획재정부 소관 중 예산·결산·기금결산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을 제외) 등으로 합니다(안 제37조제1항제17호 신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 외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57조제8항).

(3)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 전에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57조제10항 신설).

(4)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예산 등의 조치 및 재정제도 신설·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84조의4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고승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특임장관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정무위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과 외국 정치인 등은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대 국회까지는 금융분야가 2원화되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를 소관으로 하는 재정경제위가 맡았고, 금융정책 집행과 금융기관 감독 등의 업무만이 정무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금융분야는 정무위 소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었기에 정무위원회 명칭에 '금융'을 문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위원회의 직무가 쉽게 인식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국민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부디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의정부 갑 문희상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23일 본 의원 등 13인의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위사업을 시행하는 방위사업청장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임명하도록(안 제65조의2제2항)함으로써,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방위사업청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검증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방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여, 방위사업청장 본연의 업무 수행에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효대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 및 일부 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과 무단점거 사건들로 인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여야 간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으로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회의의 진행

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점거 폭력사태 처벌 단계를 간소화하였으며 국회 내 회의장 불법 점거 금지, 국회 내 기물파손 및 폭력 도구 반입 금지, 국회 직원 및 외부인의 불법·폭력행위 처벌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597)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주의는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자유롭게 펼쳐지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통해 최종결론을 도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결의 원칙은 결과의 원칙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수결원리는 의사형성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을 한다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한 국회파행을 방지하여 의회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입법부의 본래의 모습을 유지·견지하기 위해서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을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도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물론 그 임기 만료 5년 이내에는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지정을 "7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소수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발언시간 및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회의진행 방해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권을 강제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에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바, 회의를 공개 원칙으로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가 안건 처리를 못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장애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가능하지 않아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가 자의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에 대하여 지나친 정치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입법 절차가 생략되어 전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며, 국회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해서 직권상정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 요건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은 제안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안건에 한해서만 안건의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심사기일 지정 대상이 되는 안건은 30일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회부된 날로부터 5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입법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등록 인턴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 구성원의 60%를 차지하는 등 절대 다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지위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단일 조항으로 되어 있어, 보좌진의 전문직화에 저해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보좌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689)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가 끝나면 심사경과 및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국회의안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문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있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의결되는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도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제도하에서는 국회의 법률안심사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의 요지,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 및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심사보고서 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송민순 의원입니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제3항에 의해 의안을 공동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 1인만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안을 발의했음을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의원 제도를 도입하여,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의원들 간의 초당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고자 여야 의원 40인의 공동발의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법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영선 의원입니다.

안상수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회법 제54조의2는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이 없는 법안심사도 비공개로 진행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법안심사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전문가를 활용한 법안심사권도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사와 관련된 회의의 경우 이를 제한적 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보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공개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정보위원회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심사를 위한 공청회는 공개가 되는 반면,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심사와 관련한 회의의 제한적 공개 등 일관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은 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 다수 논의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의 비공개 원칙에 의해 의견수렴이 어렵고, 심지어 정보위원들은 전문가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결과를 초래해 법안심사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밀유지의 원칙과 법안심사의 공개필요성을 비교해 제한적 공개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전문성·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수정할 곳은 수정하되 원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되도록 많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768)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처(處)와 청(廳)은 주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에 있어 상당한 독립성을 행사하고 있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처와 청의 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의 처와 청의 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 검증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860)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및 기관에게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와 타 부처가 연계된 복합적인 정책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의 취득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정감사나 예산심사의 일정이 있는 정기회의 회기중에는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운영위원들께서 공감하시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이 신설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영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는 등의 직권상정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중인 안건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사가 보장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기본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위와 같은 법안의 취지를 염두에 두시고, 본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는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는 등 절차와 대화보다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폭언과 폭력이 만연한 비민주적인 모습으로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45조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조항은 그 행위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법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매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결과를 국회공보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감시를 제도화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한 국회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와 국민이 감내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안심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용산구 출신 국회의원 진영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법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입각으로 인해 정부의 개각 시마다 국회의원의 입각설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훼손 될 여지가 있으므로 국회위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막아 삼권분립의 취지 따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 개정 조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 여러분!

광주 북 을 출신 민주당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자 행정 각 부와 마찬가지로 소관업무에 속하는 정책수립 및 집행, 예산 및 인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은 각 소속기관 직제상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정부조직법상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 부의 장관 및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소속기관 직제상 신분이 장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북 강서 을 출신의 허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는 국정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또한 대정부질문 제도는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에게 소속 상임위 소관이 아닌 여타 행정부처의 국정상황에 대한 정책질의권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체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기간 동안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 제도를 실시해 온 결과 당초의 제도 도입의 본질이 왜곡되어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질문과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부의 답변, 그리고 고함과 야유, 파행과 잦은 이석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성숙되고 새로운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효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모습만을 보여온 기존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 제도를 과감히 개편하여 대정부질문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의회가 진정으로 행정부의 올바른 견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대폭 개편하고자 합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매 회기마다 대정부질문의원들만으로 대정부질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둘째, 대정부질문은 국회 제3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함.

셋째, 대정부질문특별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대정부질문 종료 후 3일간까지 한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대정부질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회기마다 교섭단체별로 교대로 맡기로 함.

다섯째, 의장이 대정부질문요지서를 정부에 도달하도록 송부하는 기한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에서 해당 질문일 5일 전까지로 변경함.

여섯째,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 등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기한을 질문일 전일에서 대정부질문 개시일 7일 전으로 변경하고, 의장이 의원의 질문순서를 정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도록 하던 기한을 본회의 개의 전에서 대정부질문 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함.

일곱째, 정부는 대정부질문 의원들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을 해당 의제별 대정부질문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질문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는 현행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국회의원들의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정부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대정부질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제출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제출되는 관계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총 625건이었으나 제출한 법률안은 457건으로 168건이 미제출되었으며, 제출한 법안 중 정해진 기한을 지킨 법안은 173건(27.7%)에 불과했으며, 제출계획에도 없는 법안이 110건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계획은 정부가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국정의 지표와 같은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제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예측가능한 의회와 정부 간 협력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변경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부계획에 없는 법률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소명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의원입니다.

정치적 안정과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비등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 확산 등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의 의사일정 작성절차, 정부인사의 국회참석 및 배석 제한, 의원의 겸직금지 등 일부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절실합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와 제17대 국회에서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제18대 국회에서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안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에 대한 직무관련성, 대상 등을 국회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사 시 사무보조자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며,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 의장의 재요청 의무를 규정하고,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 협의 시 기간을 정해 협의하도록 하고, 국회의 질문 또는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부 등은 그 참석자와 배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그 숫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비효율적인 국회운영의 개선을 앞당기는 한편 장애인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용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회의장의 무단점거 및 기물손괴, 국회의장에 대한 집무 방해 등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은 의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국회의 의사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210)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김학송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법'이라 함은 규정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법조항의 경우, 의미 전달에 있어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경과기일을,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뒤에 괄호로 묶음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20일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만 인식,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부분을 독립 조항으로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법 제59조(법률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 그리고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로 개정하여, 보다 정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동의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갑 출신 민주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제가 2009년 3월 25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시급한 국정현안이 발생하여 국정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비로소 한시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국정현안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없는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회스스로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회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4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제3조제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자료수집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른 법률안제출권, 제54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제58조에 따른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제61조에 따른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제63조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권 등 여러 역할을 맡고 있어 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만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입니다(안 제128조제2항 신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원 팔달구 출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 외 26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 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의 회계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는 정기국회 중에만 개회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시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게 되어 연중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정 취지와는 달리 상임위와 예결위의 2단계 예·결산 심의구조, 예결위원의 겸임 허용 및 1년 임기제로 인한 전문성 미흡 등으로 국회의 예·결산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 하고, 이에 수반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의 권한을 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조정, 국회의 회계조사기능 도입 등을 통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 의원의 입법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으며, 그 뒤 2003년 국가정보원, 검찰총장, 국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확대했고, 2005년에는 모든 국무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개편과 정책결정의 다변화, 차관급 공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가 확대되면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으로 보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의 장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에 의한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사무총장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신설해 입법부의 중요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회 스스로가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도 매번 쟁점사항으로 인해 여야간 폭력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1991년 13대 국회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심사하는 관계로 본회의에서 심사안이 의결된 예가 극히 드물 정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유명무실화 되어왔습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고자 2005년 윤리특별위원회 시행규칙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함으로써 그 심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도록 하여 되풀이되는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회 내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정치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정부부처·공공기관에서의 인권보호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촛불집회 수사, 쌍용차사태 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권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세계12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는 인권수준에 대해 개선권고가 있었고 국제엠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방한 중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한국의 인권후퇴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행 국회법 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의 예처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청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상천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의회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간헐적으로 다수 여당의 일방적이며 기습적인 의안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야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국회파행사태가 야기되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타협추구형 국회법 개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4조, 제65조의 경우 위원회(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도록 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 또는 그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공청회,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건내용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타협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안 조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조정을 위한 협상(이하 '법률안 조정'이라 함)을 요구한 경우에는 표결 이전에 반드시 '법률안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안 조정의 절차는 상임위원회 등에서는 각 간사, 본회의에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교섭단체별로 선정한 조정의원들의 협상으로 진행하되, 조정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안이 채택되거나 상임위 등이나 본회의에서 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절차의 종료를 의결한 때에는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안 조정에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조정절차의 종료의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를 법률안에 한정한 것은, 법률은 그 효력이 항구적이고 입법과정에서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한 국민들까지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이므로 국민 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야 위원 여러분께서 깊이 검토하시고 지지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김포 출신 유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등 32인이 지난 2009년 4월 13일 공동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과 폭력사태로 인한 국회운영의 파행이 빈번함에 따라 국회운영의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또한 국회운영 등에 있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회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완하고, 법률안의 상정 및 심사에 있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우선하며,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회의 회기 중 회기 개시일부터 첫 2주간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며(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회소속기관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3조 신설).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안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되며(안 제58조제2항),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폐회 중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고(안 제59조제3항 신설),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하면 경과 후 최초의 회의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상정된 후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86조제3항·제4항 신설).

그리고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경우 의원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론횟수와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안 제106조의2 신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따른 토론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8조제4항 신설).

또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안 제46조제2항), 의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징계대상의원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심사시간을 지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안 제157조제4항·제5항 신설), 사무총장은 폭력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자 중 의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145조의3 신설).

부디 합리적·효율적 국회운영과 국민들이 원하는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 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법안의 발의단계에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원안이 대안이나 수정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추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수정된 비용추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지 않고 본회의에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재정부수법안의 원안이

상당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도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본회의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정치적 악용가능성, 졸속입법의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의 의제 범위에 관하여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의안이 제출되면 그 의제가 원안의 의제 범위 밖에 있더라도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즉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의 의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일 의제」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 순서를 규정한 국회법 제96조를 적용하여 이른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수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의 근간을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마저 있습니다.

즉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나 극심한 반대 여론 등으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심사가 어려운 문제 법안을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변칙 통과시키는 데에 수정안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수당이 여야 간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먼저 본회의에 회부시켜 놓고, 이 원안의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문제 법안을 본회의 당일 수정안 형식으로 전격 제출하여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소수당은 발의 절차와 상임위원회의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문제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반대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제96조제2항을 오해한 것으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은 동일 의제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수정안이 가결된 것은 곧 원안이 부결된 것이므로 더 이상 원안을 표결할 필요는 없지만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밝힌 것일 뿐이며, 의제가 동일하지 않아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의안인 수정안과 원안의 표결 문제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의제가 서로 다른 별개 의안은 각각 별도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수정안 처리 관행은 국회의원이 표결도 하지 않은 의안을 표결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된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합의제 결정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근간을 흔들고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칙을 훼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종래의 잘못된 본회의 수정안 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현행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 절차를 담보하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의안 표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제가 동일하지 않은 의안을 수정안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본회의 수정 동의의 범위를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본회의에 회부된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의제 범위 내에서만 수정안 제출이 허용되고, 이른바 '수정안'이 원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의 절차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 유무를 따져, 상임위원회 심사가 있었던 법안은 국회법 제87조 소정 요건을 갖

춘 경우 별개 의안으로 본회의 제출이 허용되고, 발의 절차가 없었던 의안은 '수정안' 제출을 발의 절차로 보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는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원안의 나머지 조항은 반드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 본회의 수정안 처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수정안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안 표결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636)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그러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나 국회에서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한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사람에 대한 재검증은 오히려 공직자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정당 간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그 임명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 그 재직 중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공직자일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제4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한나라당 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와 의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제출시기가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심사할 법안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임시국회가 2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관계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하루에 상정하는 법률안 수가 수십여 건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48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 상정일과 관계없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개정법률안은 20일, 제정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1개월 이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여 위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및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안 심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심도 있는 법률 제·개정으로 국민 권익보호는 물론,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본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전

국적 협의체는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8조의2 신설), 소관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이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안 제6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8조의2제1항).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개정할 때 지방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특성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이나 주민의 요망사항을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전국적 협의체가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034)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국회의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심의는 단지 산술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등의 행위를 통상 '재정'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조항의 '비용추계'를 '재정소요추계'로 개정함으로써 그 용어의 의미와 사용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용경 의원입니다.

2009년 6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로 발의되어 동년 10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 현행 의결절차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 의결절차에 있어서, 법안의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예산안의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사실상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 관련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1일의 의미가 모호할 뿐 아니라, 단서규정으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일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도 의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의원들이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법률 혹은 예산 관련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직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잦아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없이 의결에 임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될 법률안 혹은 예산안에 관한 의사일정은 해당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심사종료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법률안 혹은 예산안에 관한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를 마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도록 하여, 모든 의원들이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114)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 여러분!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정부질문은 질문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질문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부처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대정부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처에 요구를 하여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처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취지에 운영위원들께서 공감하시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이 신설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매 짝수 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집회요구서의 미제출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생문제 해결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정한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집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의장이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는 경우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을 원활히 하여 국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우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이들 요구 주체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요구 주체 중 위원회의 경우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심도 있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물론, 안건의 심의를 위한 경우에도 의결 이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자료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구을 출신, 국회의원 이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각종 자격급여의 증가를 위한 예산부수법률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때,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인 지출을 유발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부담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재량사업)을 위축시켜 지방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부디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각각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처럼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본회의·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하고 그 준비의 출발선은 행정부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요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임기동안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128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예산부수법률의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발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률안의 경우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뿐만이 아니라,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예산부수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될 때, 적절한 국고지원 또는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을 경우, 이러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제도의 개선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정요구의 범위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극소수가 이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정책개선사항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제도"의 운영을 위해 정책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게 되나 재정문제들 중에는 당해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기획재정부를 소관으로 하지 않는 위원회들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도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진 또는 유사·중복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시 조정하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결산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제도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9조의3 신설).

나. 국회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정책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4조의4 1항 신설).

다. 위원회는 반복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 의제로 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4조의4 2항 신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처 또는 기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시정요구 대상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음(안 제84조의4 3항 신설).

마.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와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한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84조의4 1항 신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보호와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구성에서부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민주당 박주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골격입법에 그치고 세부적·기술적 사항에 관해서는 위임입법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입법의 폭증에 편성하여 행정입법이 행정편의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수권입법보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권한의 남용이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행정입법의 제출의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입법을 적절히 통제하고 국회의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행정입법의 제출 및 처리결과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입법이 국민의 생활관계를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행정입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안 98조의2제4항에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행정입법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고, 98조의2제5항에 국회는 행정입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행정입법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관계 장관의 소명 또는 출석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익산 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실시되어 검찰이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광우병 보도 관련 PD수첩 수사 등을 볼 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분별한 인권 침해 등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중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적이 그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이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현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국회출석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능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하는 법안인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70)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7조제1항에는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제2항제1호에는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임시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에 의해 개회일을 정해온 관례 때문임.

국민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시회의 개회일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명시된 짝수 월의 1일에 임시회가 자동개회되도록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일정을 정례화하여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과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한 법률안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최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 등 쟁점이 되는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그 역할이 변질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없애고 법사위 소관이던 체계·자구심사를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실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게 법안을 처리할 것임. 기존의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던 전철은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됨. 의회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우리 국회와 같은 법사위는 존재하지 않고, 상원과 하원 사법위로 구성되어 법무부 및 법제처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Judiciary)의 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Legislation)의 기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 제44조제3항).

또한 미국의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강제이송제도인 Discharge Petition을 참고하여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혹은 법률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는 동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그리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안건 및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을 위해 항상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심어주고자 함(안 제8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 을 출신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8대 국회는 개원부터 파행을 겪기 시작하여 매 회기마다 여야 간 극한 대결을 일삼고 있으며,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국회가 사회적 갈등과 문제의 조정해결사가 아니라 갈등의 진원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현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간의 대립을 보면, 다수의 민생법안은 뒷전인 채, 극소수의 쟁점법안에 매달려 전체 국회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정당의 대표의원 간 또는 상임위원회 간사의원 간 합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은 상시국회제 도입, 상시국감제 시행, 법안자동상정제 및 법안조정절차제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및 표결처리 보장,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 의사당 내 질서유지권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중심의 국회운영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하고, 의안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를 없애고 의회민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수견해 존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 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시 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삼권분립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은 핵심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중심제에 따른 승자독식 제도와 중앙권력집중형태가 만연하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대통령 지시에 따르거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일부 발생하여 입법부는 통법부로 전락하고, 사법부는 독립성 포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민주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의 위기는 물론 민간독재 또는 의사 파시즘 전개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출발점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기능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예산안·결산 심사·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을 1년 365일 계속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국회, 상시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정부기관 등은 무성의한 자료 제출 또는 차일피일 미루기로 일관하여 자료 제출 때문에 상호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으며, 대정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한 및 요구자료 제출기한도 10일로 되어 있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상시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서류제출기한 및 서면질문 답변기한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은 단독으로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료제출기한 및 대정부 서면질문 답변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국회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하나,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가 예산안과 결산의 부속서류로 제출되므로, 국회가 예산안 등의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심사에 집중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해 국회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 성별 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대표발의 의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취지설명 등 진행해야 할 사후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라 의안 발의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정하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발의한 법률안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입안 시 장·단기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인정하여, 대표발의자의 궐원이나 그 사고가 있으면 안건에 연서된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순 등으로 사후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발의안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법안의 취지와 불가피성을 널리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직 사퇴행위가 당파적인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퇴절차를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불신 풍조를 예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무행위의 존엄성을 높이는 한편, 진정으로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인 새로운 사퇴절차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이 이루어지도록 한 현행 사직절차를 사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접수함으로써 사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비례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도록 하고, 사퇴서를 접수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선거를 통한 국민 위임행위의 신성한 가치가 실현되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애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선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그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의 월권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치적 변수에 의해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체계의 헌법합치성과 자구심사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가결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상임위 중심주의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법사위 소수 의원들의 불합리하고 월권적인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동료 의원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더불어 현행 제도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법률안 의결절차에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당과 일부 의원의 의견에 단순한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위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책 결정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 내로 마쳐야 하고,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48시간 전까지, 모든 의원에게 해당 법률안이나 그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 내로 함.

본회의 상정 48시간 전까지 해당 법률안과 그 심사보고서를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이상과 같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시 소위원회 위원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안심사소위에 참여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과 심사가 어려울 수 있고,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단서조항에서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체계상 문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한 의안심사와 법체계상의 문구체계를 맞추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위원회의 의안 심사 시 당해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제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제57조 제9항 신설).

2.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 본문의 "개회할 수 있다"를 "개회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개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제63조의2 제1항).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률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무지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안 제79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동료 의원 26인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차관급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자질, 정책역량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며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실의 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통상교섭본부장·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사무총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시어 법안심사에 임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의사의 진행은 그 과정이 무엇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이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처럼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의 결정 과정에서 소위 '대리투표', '날치기통과'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의 의사가 상정 안건에 대한 전자투표 등 기록표결을 통하여 의결되고 있는바, 표결과정 중 정당한 투표권자 즉,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기치 못한 사정 등에 의해 표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표결 결과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임할 시 표결 전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도입하여 정확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의사 안건에 대한 표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 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법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제도는 국회법 제128조상의 보고·서류제출요구 등과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시·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같은 법 제127조의2제1항상의 '청구'라는 표현은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요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27조의2를 개정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7조의2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요구를 하거나 감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입니다.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행 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 이해관계에 의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가 제때에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급한 민생법안 등 의안의 심의 의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

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일 5일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6662)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입법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입법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의2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출실적 및 제출내용이 부실하고 상임위원회에의 검토실적 및 사후조치 또한 부진하여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입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대통령령 등을 전담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제출대상 행정입법을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결로 해당 행정입법을 부인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가 채택된 행정입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국회 본회의에 의하여 부인의결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행정입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현재까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서 정부·행정기관이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유는 정부 및 행정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당해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요구를 국회법에 신설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해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 의원이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서류제출은 거부할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班)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강창일 의원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입법에 필요한 자료수집·정보확보 등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운용상태, 행정입법과 자치입법의 법령위임 범위 일탈 여부 등도 그 대상이 되고, 일반행정작용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 내지 타당성을 감사·조사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행정집행의 적법성·정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진행중인 수사의 속행·소추의 간섭 혹은 법관의 소송지휘·재판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의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등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혹은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사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라는 개념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언론중재 관련 결정사례와 법원 판례가 다수 형성되어 있어 법 해석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여야 같은 위원 수로 하고,

둘째,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셋째,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 또는 공적인 관심사로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행사되도록 하며,

넷째, 위원회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 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30일 이내에서 연중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더욱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성동 갑 출신 진수희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 안에 과다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로 부실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299명이 20일 동안 447개 피감기관 감사하게 되어 하루에 2~3개 기관을 중복감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4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국감감사방법으로는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의원 1인당 하루 15분 내외에 불과한 감사시간으로 단편적인 질문·중복질문과 더불어 의미 없고 성의 없는 답변이 반복되고 되고 있어 이로 인해 피감기관들 감사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특이한 제도로 해외 선진국에서의 국정감사는 의회와 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이자 상시적 국감체제이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정감사가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판단하시어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갑 출신 민주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제가 2009년 3월 25일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시급한 국정현안이 발생하여 국정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야 비로소 한시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국정현안에 대한 진상파악과 규명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없는 국정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회스스로의 권위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회법에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설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45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제3조제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우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와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 소위원회 또는 반(班)으로 하고 이들 주체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요구주체 중 의결 외에 3분의 1 이상으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또는 반(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만이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개별 의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233)을 제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10조의 제목 "(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을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를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안 제10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광진 갑 출신 권택기 의원입니다.

안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8대 국회는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국회 무용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신뢰를 잃었으며,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선과 함께 권위가 실추되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9월 10일부터 2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매년 25일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 기간 중에 분할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별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되, 모든 국정감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정기회 시작 이전에 완료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상임위의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정조사 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 헌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게 하여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별의원도 직접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원활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제도 정착을 위한 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경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에 관한 권한 및 국정통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의 법정기간이 현행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5일제가 시행된 2005년 이후부터는 그 이전에 비해서 국정감사 수행기간이 실제 2일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업무의 폭과 범위가 방대해졌고 공직사회의 비리 유형과 행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 을 출신 구본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중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만이 위증이나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 등의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한화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거짓진술로 밝혀졌으나, 국회에서 증인선서하지 않고 한 발언이라 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선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며, '선서'라는 형식적 요건을 기회 삼아 법망을 빠져나가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위증 또는 감정인의 허위감정을 처벌하는 기존의 법 규정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 제출하거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공무원 등 보고의무자가 국회에 출석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어도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 나갈 수 있었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8명이 제출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0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 요구는 현재까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8조에 제2항을 신설해 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에서 정부·행정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요구를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그 제출을 거부할 경우 본회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규정한 사유는 정부 및 행정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당해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적정성을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하여 다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개인의 서류제출요구를 국회법에 신설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대표발의해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 의원이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이 서류제출은 거부할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班)의 의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 등 국회의 요구로 제출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절차와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미미하여 이 법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여 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가능하게 하며, 국회의 고발건에 대하여는 검찰의 처분 사유와 결과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매년 국정조사 때마다 반복되어 일어나는 자료부실과 증인 출석요구 거부를 방지하고 국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234)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하여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정부 등에 요구할 경우 대상기관에서 개인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 내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4조제1항에 정부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법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법안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증언한 사실이나 제출받은 서류를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및 해태하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해태하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기관의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는 데 있어 운영상 부득한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때 국가기관이 허위로 답변 또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증인 또는 감정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도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증인 또는 감정인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또한 국가기관이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하며, 미진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우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의원 등이 기관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충분한 서류제출을 보장받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등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서류제출 요구 증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가능하지만 그 고발에 있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와 같이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주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 갑 장광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만이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개별 의원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233)과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5236)을 제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 제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의원이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5조제1항 본문 중 "告發하여야 한다."를 "고발하여야 하고, 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의원이 고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의원이 서류제출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의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의 사려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철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안건심의에 포함되어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의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불출석등의 죄(제12조)보다 더 형을 가중한 국회모욕의 죄(제13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모욕의 죄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 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4항)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위원회 의결을 방송이나 인터넷 등으로 듣거나 보는 즉시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도피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제시할 수 없게 되어 국회모욕의 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즉, 수감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자, 현역군인 등 도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행명령 불응으로 인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행명령 의결 이후에 동행명령에 불응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불출석의 죄보다 더 가중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행명령 의결 이후에 동행명령에 불응할 목적으로 도피하는 행위도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13조).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주당 박은수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뚜렷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지어는 정당한 자료요구에 협박을 일삼는 등 행정부의 대 입법부 경시풍조가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협박과 대 입법부 비하발언이 속출하고, 거리낌 없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동안에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이유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시비가 없지 않았으나, 최근의 풍조는 단순한 '시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여야를 떠나 입법부의 위상 하락을 한탄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에 의해 고발이 가능하도록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 위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제명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도 동 법률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보다 심도 깊은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입법부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김정권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의 구성과 절차·운영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국가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소지를 없애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인사청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자료요구, 수집, 정리 등의 실무 작업을 뒷받침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인사청문회가 이 모든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인사청문회의 운영도 체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실무 작업을 보조할 기구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인사청문 보조기관을 설치하여 인사청문회의 사전조사활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려 기간에 쫓겨 부실한 인사검증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안 제6조와 제9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4)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요구, 수집·분석 및 정리 등 실무작업을 위한 준비기간과 청문회 실시기간이 촉박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 20일 이내 및 인사청문회위원회의 활동기간 15일 이내에 포함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4129)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밝혀진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한 사실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해산된 후에 밝혀진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위증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중하게(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단형을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서의 책임에 비례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문학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10일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은 인사청문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위증 등을 할 경우 선서를 한 증인이나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위증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기간이 20일,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15일로 제한되어 있어 검증제도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허위 진술과 허위 자료제출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내실 있는 검증과 인사청문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동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개편과 정책결정의 다변화, 차관급 공직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는 정부는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사전조사 결과보고서를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및 행정각부의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10일 늘였으며, 인사청문회 기간도 현재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도록 규정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재직 혹은 재직하였던 자의 업무성과도 청문위원들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무직공무원 등 공직후보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서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자료수집의 근거가 없어 사실상 공직생활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인 인사 또는 성과평가서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공직생활 중 인사 또는 성과평가도 포함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안이유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그러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나 국회에서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한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사람에 대한 재검증은 오히려 공직자의 위상에 흠집을 내고 정당 간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권보호와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65조의2 제2항제1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구성에서부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토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당 익산 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직후보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임의배당과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 혐의로 고발되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관련 조항

미비로 인해 검찰에서 각하 처분이 내렸으며,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역시도 같은 논리로 처벌을 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나아가 국민으로 하여금 공직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마땅히 근절시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고,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고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을 보다 내실화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인 만큼,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의원 82인의 찬성을 얻어 당론으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내실화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잘 살피시어 법안통과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경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의 제안취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국회의원 보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의원의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 라인 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조직원"에서 스탭 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좌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보좌직원"을 두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친박연대 비례대표 정하균 의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지난 17대에 두 명, 18대 들어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장애인 의원이 등원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의원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를 가진 의원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이외에 전문적인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인력의 지원은 그동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국회사무총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원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계약직 보조직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에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의원에게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두 명 이내의 보조직원을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의원이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었던 지난 6월, 국회는 국회법상으로 규정된 임시회를 열지 못하고 법정기일보다 82일이나 지난 8월 말이 되어서야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들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6월 세비 부당수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국회 개원 지연으로 인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의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2항을 신설,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가 집회되지 않는 경우 그 날이 경과된 날부터 집회된 전 날까지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최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리로 인해 구금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가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불

신을 조장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이 되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입법 활동 등 주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비록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되기는 하지만 직무가 사실상 중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 수당을 제외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별도의 견제기구가 없는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제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 위원님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하고 일 잘 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들께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원 구성을 하지 못할 경우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국회의장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각종 정책활동비)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사무처 공무원 총 3027명 중 59%에 해당하는 1794명에 이르고, 그 업무도 의원의 입법 및 정책 보좌, 국정감·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직원의 이와 같은 중요한 의원보좌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몰입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직원의 역량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보좌직원의 관련 규정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보좌직원의 신분, 업무범위, 역할 및 책임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입법지원기관의 하나로 국회법에 의원보좌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직원)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은 본 의원이 규제와 관련한 법을 발의할 경우, 의원입법일지라도 규제심사보고서를 첨부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를 국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규제영향분석 전문조직'을 국회예산정책처 내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원활한 규제영향분석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홍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광진 갑 출신 권택기 의원입니다.

홍준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률안 등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첨부된 경우에도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법률안 등 의안 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규제영향분석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안 제3조).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안상수 국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 소속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 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의 추계와 그 근거 자료 제공 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임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 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법안을 의뢰한 경우 법제실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법안 성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할 경우 입법

조사처에 국회의원이 그 기관에 의뢰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보좌진법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김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사무처 공무원 총 3027명 중 59%에 해당하는 1794명에 이르고, 그 업무도 의원의 입법 및 정책 보좌, 국정감·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직원의 이와 같은 중요한 의원보좌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몰입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직원의 역량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보좌직원의 관련 규정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고 보좌직원의 신분, 업무범위, 역할 및 책임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국회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